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D42506-F-1202
건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포에테빌레 제101동 제1층 제101호 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의뢰인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0 (장항동, 파크프라자 602호)

대표전화 : 031-932-0072 FAX : 031-932-0073



인증서번호 : P250627-0001

심의일자 : 2025-06-27

가 격 심 의 인 증 서

감정서 번호	D42506-F-1202	발 의 처	본사
감정평가액	一금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整 (₩1,624,000,000.-)		
물건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포에테빌레 제101동 제1층 제101호외		
평 가 목 적	공 매		
거 래 처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제 출 처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담당평가사	신민우		

※ 심사사항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기본적사항의 확정
3. 평가방법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제규정의 준수여부
5. 기타 유의사항의 참작여부

심사의견

적정

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사운영규정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기에 가격심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신 민 우)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 사 장

申 珉 宇

박 희 배

(인)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십육억이천사백만원정 (₩1,624,000,000.-)						
의뢰인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목적	공매(인증서번호 : P250627-D001)		
제출처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 건축물대장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5. 06. 16	2025. 06. 16	2025. 06. 18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5세대	구분건물	5세대	-	1,62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624,000,000
심사 확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김 기 록 석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동성당”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6월 16일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5년 6월 1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임대내역’ 및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

- 일련번호(가~다)는 내부확인하여 내부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일련번호(라, 마)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평면도'를 기준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구분소유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체로 거래(분양) 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개별평가는 곤란하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명세표'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배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행정기관: 고양시 일산동구청) : 101동 101호, 102동 301호, 302호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세대주	소유자와의 관계	전입일자	열람일자	비고
고나미	미상	2021.06.18	2025.06.16	101동 102호
서정원	소유자	2020.12.03	2025.06.16	101동 201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1. 부동산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건 물 명	포에테빌레	
주	용	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사용승인일	2019.0923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지하 1층/지상 4층	
동		수	2동			세 대 수 (호 수)	16호	
일련 번호	동·층·호		용 도 위 치	전유면적 (㎡)	공용면적 ¹⁾ (㎡)	전유+공용 (㎡)	전 용 률 (%)	대지권면적 (㎡)
가	101동 제지1층 제101호		다세대주택 -	56.78	16.23	73.01	77.77	64
나	101동 제지1층 제102호		다세대주택 -	54.74	16.71	71.45	76.61	61
다	101동 제1층 제201호		다세대주택 -	55.47	15.94	71.41	77.68	62
라	102동 제3층 제301호		다세대주택 -	56.38	15.73	72.11	78.19	63
마	102동 제3층 제302호		다세대주택 -	54.34	15.39	69.73	77.93	61

■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1)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주'에 해당하는 면적만 포함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 상황

2.1.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2.2.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 도	전유면적 (㎡)	거래일자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위 치		사용승인일		
ㄱ	신봉동 514	수지헤르메스 101동 제3층 제301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 주택)	65.5	2022.06.23	380,000,000	5,801,526
			-		2022.07.14		
ㄴ	신봉동 553	광고산파크하임테라스 102동 제2층 제201호	다세대주택	56.625	2022.07.15	350,000,000	6,181,015
			-		2016.06.21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감정평가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 도	전유면적 (㎡)	기준시점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단가 (원/전유㎡)
			위 치		사용승인일			
a	신봉동 455-4	포에테빌레 101동 제4층 제402호	다세대주택	54.74	2025.07.14	기타	297,400,000	5,432,955
			-		2019.09.23			
b	신봉동 455-4	포에테빌레 102동 제4층 제402호	다세대주택	54.34	2024.08.09	경매	355,000,000	6,532,940
			-		2019.09.23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	층	위치	가격수준(원/전유㎡)	비 고
전원 주택지대	다세대주택	1~3	-	5,800,000 ~ 5,900,000	본건 유사

4. 경매통계

용도별		경기 용인시 수지구 2024년 06월 ~ 2025년 05월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가율(%)	총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집합건물	100,981,666,660	87,366,229,526	86.5	332	142	42.8
다세대	3,860,000,000	2,200,000,000	57.0	56	14	25.0
연립	4,060,000,000	2,845,789,999	70.1	6	2	33.3

[출처: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부동산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text{비준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1.1. 거래사례 선정

1.1.1. 거래사례 선정 기준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1.1.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 치	전유면적 (㎡)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가~마	L	신봉동 553	광고산파크하임테라스 102동 제2층 제201호	다세대주택 -	56.625	2022.07.15 2016.06.21	350,000,000	6,181,01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1.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지역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의 지수는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1.3.1.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

일련 번호	지 역	유 형	적용 통계지수
가 ~ 마	경기 경부2권	연립다세대	2022.07.15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2년06월) : 103.3 2025.06.1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5월) : 99.8

1.3.2.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 호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 마	L	2022.07.15 ~ 2025.06.16	시점수정치 : $99.8 \div 103.3 \approx 0.96612$	0.9661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1.4.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주거용]

항 목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세 부 항 목	대중교통의 편의성	시공업체의 브랜드	층별 효용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시설 등의 배치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향별 효용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 등의 배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차량이용의 편리성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단지 내 면적구성	내부 평면방식(베이)	
	자연환경 (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 통로구조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4.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가	ㄴ	0.95	1.03	1.00	1.00	0.979
		사례 대비 본건은 단지내부요인(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에서 우세하나, 단지외부요인(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합니다.				
나	ㄴ	0.95	1.03	1.00	1.00	0.979
		사례 대비 본건은 단지내부요인(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에서 우세하나, 단지외부요인(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합니다.				
다	ㄴ	0.95	1.03	1.00	1.00	0.979
		사례 대비 본건은 단지내부요인(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에서 우세하나, 단지외부요인(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합니다.				
라	ㄴ	0.95	1.03	1.00	1.00	0.979
		사례 대비 본건은 단지내부요인(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에서 우세하나, 단지외부요인(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합니다.				
마	ㄴ	0.95	1.03	1.00	1.00	0.979
		사례 대비 본건은 단지내부요인(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에서 우세하나, 단지외부요인(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합니다.				

1.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5.1. 적용단가

[적용단가: 원 미만 절사]

일련 번호	층·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가	제지하1층 제101호	6,181,015	1.000	0.96612	0.979	5,846,198
나	제지하1층 제102호	6,181,015	1.000	0.96612	0.979	5,846,198
다	제1층 제201호	6,181,015	1.000	0.96612	0.979	5,846,198
라	제3층 제301호	6,181,015	1.000	0.96612	0.979	5,846,198
마	제3층 제302호	6,181,015	1.000	0.96612	0.979	5,846,19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비준가액: 유효숫자 셋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층·호	적용단가(원/㎡)	전유면적(㎡)	비준가액(원)
가	제지하1층 제101호	5,846,198	56.78	332,000,000
나	제지하1층 제102호	5,846,198	54.74	320,000,000
다	제1층 제201호	5,846,198	55.47	324,000,000
라	제3층 제301호	5,846,198	56.38	330,000,000
마	제3층 제302호	5,846,198	54.34	318,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1. 부동산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구분건물	1,624,000,000
합 계	1,624,000,000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1,624,000,000
합 계	1,624,000,000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포에테 빌레 제101동	도시형 생활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3층				
	[도로명주소]			지1층	156.35			
	경기도			1층	140.03			
	용인시			2층	136.86			
	수지구			3층	136.86			
	신봉1로248번길 74-13			옥탑1층	15.78			
	동 소	455-4	대	자연녹지지역	998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지1층 제101호	56.78	56.78	33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73.01㎡)
				소유권	64			
				--- 대지권	998 x---- 998	64		
나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지1층 제102호	54.74	54.74	32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소유권	61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다				--- 대지권	998 x---- 998	6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60,000,000 160,000,000	71.45㎡)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201호	55.47	55.47	324,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71.41㎡)
				소유권	62			
				--- 대지권	998 x---- 998	62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62,000,000 162,00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포에테 빌레 제102동	도시형 생활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248번길 74-13	1층 2층 3층 4층	151.38 143.44 140.97 140.97		
				옥탑1층	14.28			
				자연녹지지역	998			
1	동 소	455-4	대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라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1호	56.38	56.38	33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72.11㎡)
				소유권	63			
				---	998 x----	63		
				대지권	998			
마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2호	54.34	54.34	318,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69.73㎡)
				소유권	61			
				---	998 x----	61		
				대지권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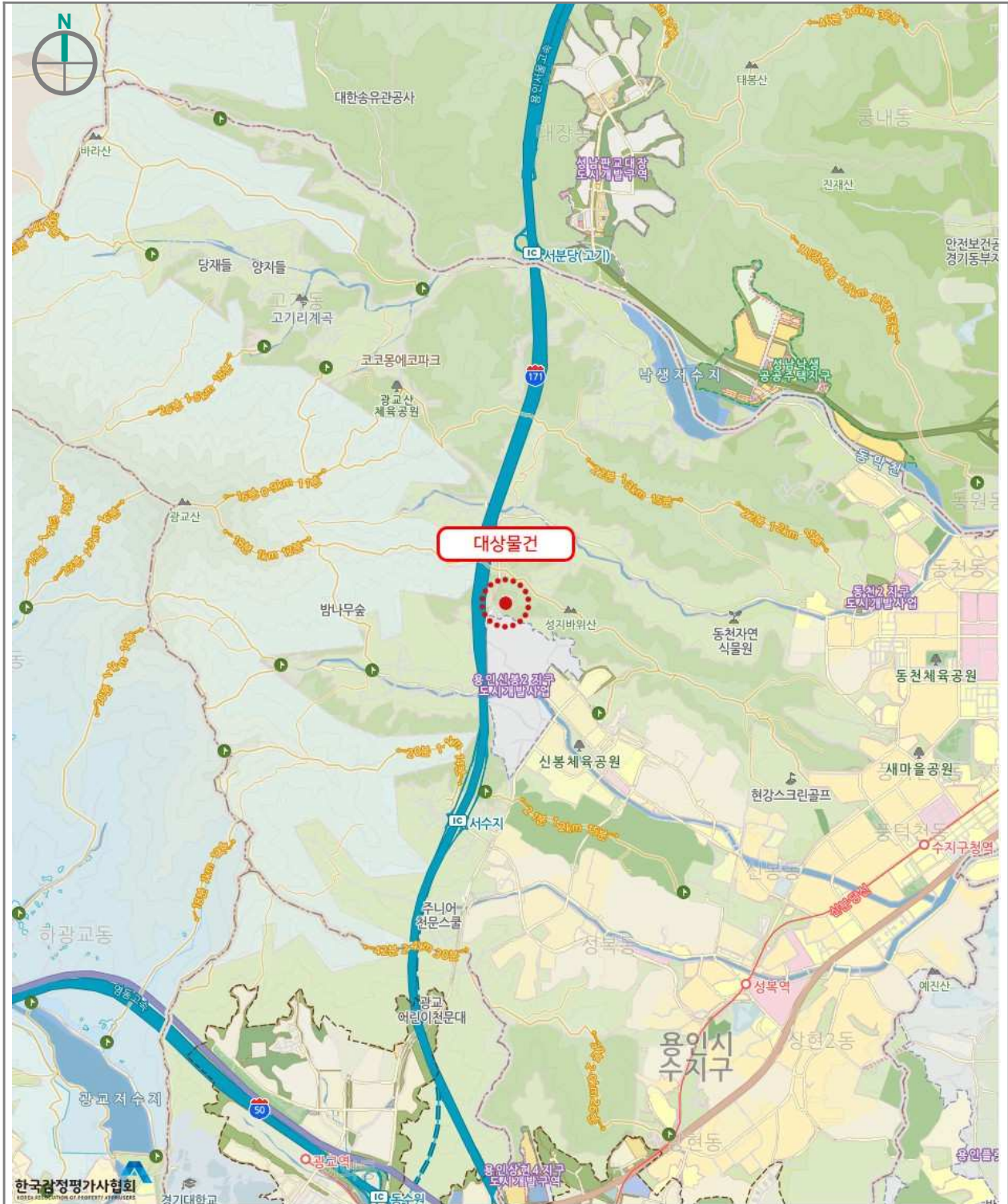
(구 분 건 물) 감 정 평 가 요 항 표

지 리 적 위 치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신봉동성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 위 환 경	본건 주위는 전원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합니다.
교 통 환 경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접 면 도 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와 접합니다.
지세 및 형상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부정형 완경사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건물 구조 및 마감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건물 내 제1층 제101호 외로서, 외벽 : 치장석붙임, 내벽 : 벽지도배, 타일, 창호 : PVC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가~마) :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전기, 위생 · 급배수 · 급탕설비, 개별난방(LPG), 소화, 승강기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임 대 관 계	본건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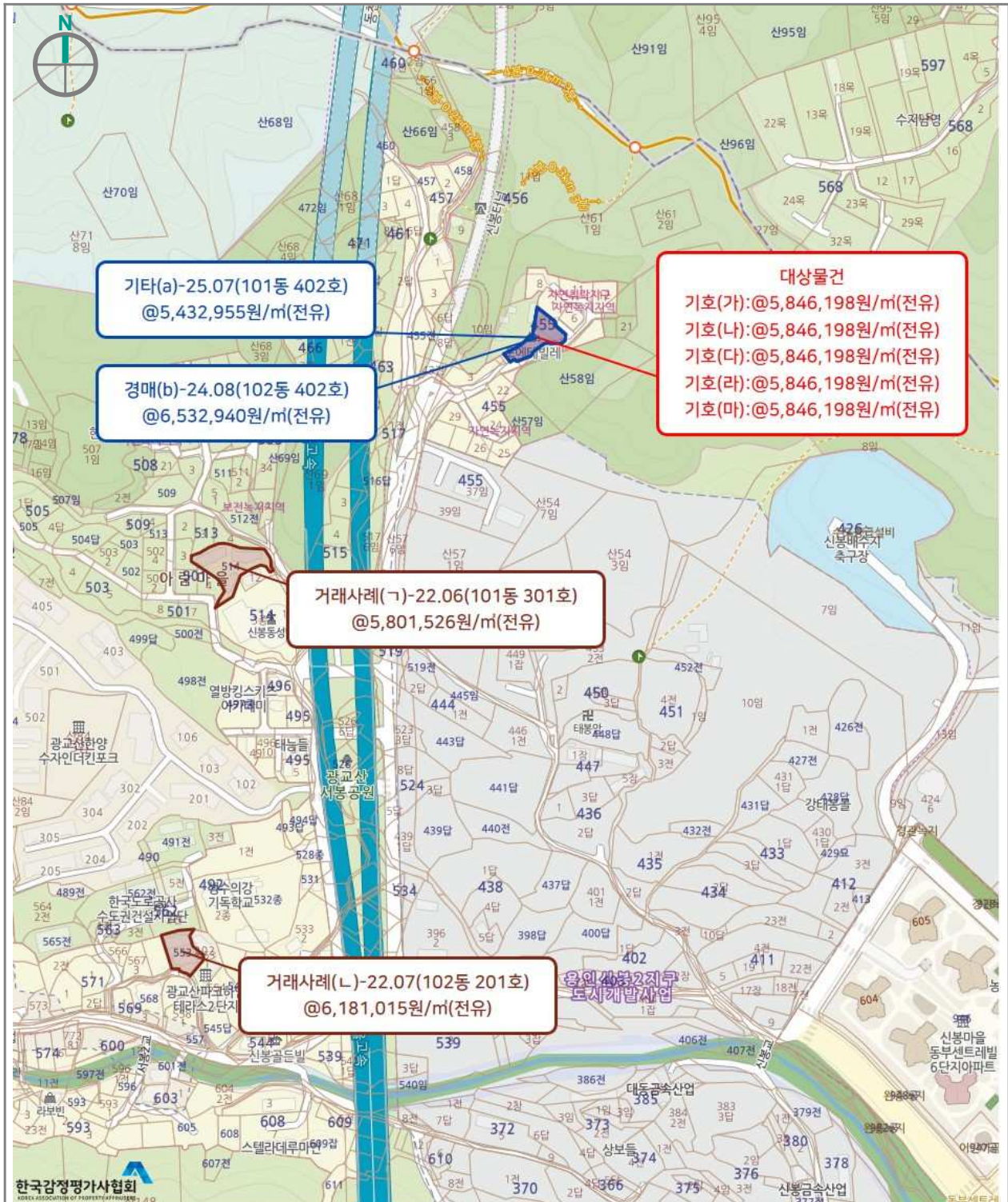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포에테빌레 제101동 제1층 제101호 외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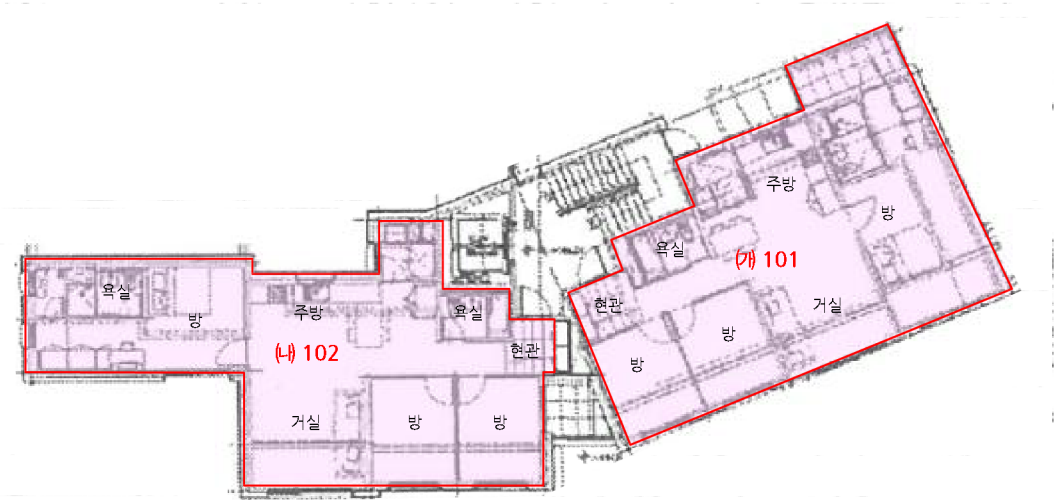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포에테빌레 제101동 제1층 제1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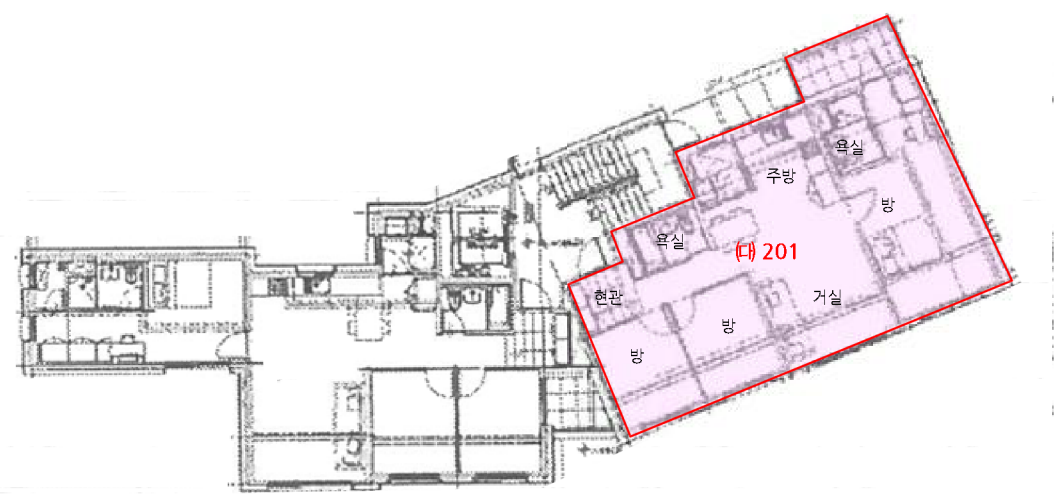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제101동 제1층 호별배치도 및 제101호 외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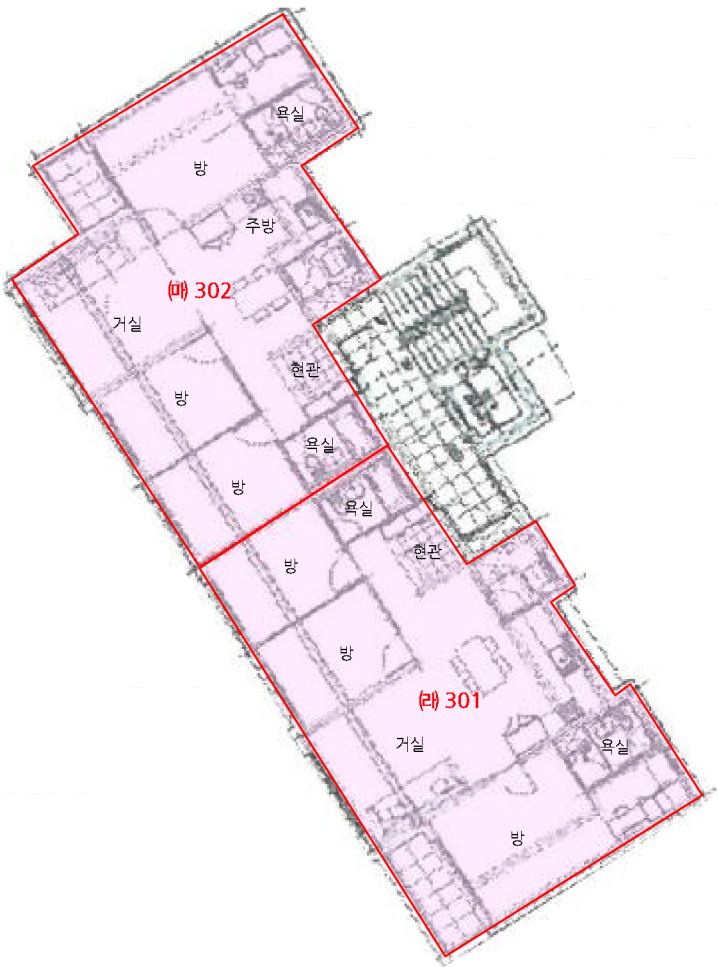
[제101동 제2층 호별배치도 및 제201호 내부구조도]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N
4
S
NON SCALE

[제102동 제3층 호별배치도 및 제301호 외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10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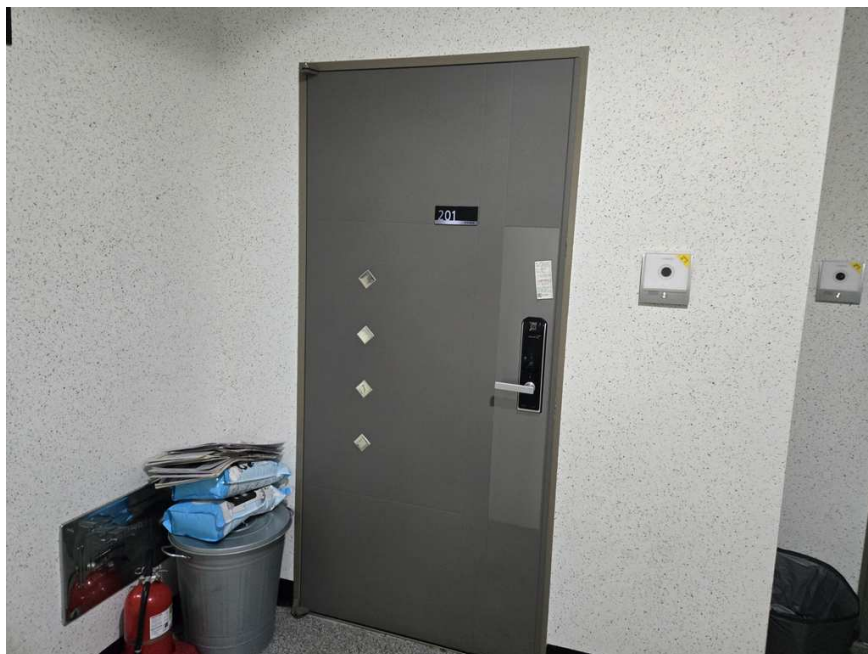


본건 전경(101동)

사 진 용 지



일련번호(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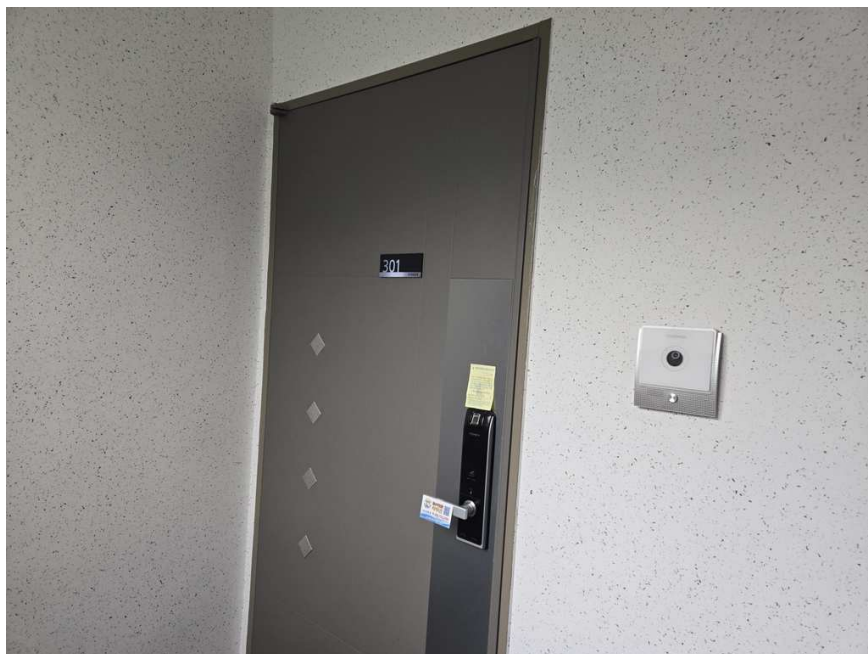


일련번호(다)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102동)



일련번호(라)

사 진 용 지



일련번호(마)



주위 환경

사 진 용 지



주위 환경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발급일자	2025년 6월 16일 10:55:56
------	------	-----------------------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248번길 74-13, 101동 101호 (신봉동)
	지번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101동 101호

세대순번	세대주 /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발급일자						2025년 6월 16일 10:56:06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248번길 74-13, 101동 102호 (신봉동)									
		지번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101동 102호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1	세대주	고 나미 (高那美)	2021-06-18	거주자	동거인								
	최초 전입자	2021-06-18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발급일자						2025년 6월 16일 10:56:17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248번길 74-13, 101동 201호 (신봉동)									
		지번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101동 201호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세대주		서 정원 (徐鄭源)	2020-12-03	거주자								
1	최초 전입자		2020-12-03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발급일자		2025년 6월 16일 10:56:31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248번길 74-13, 102동 301호 (신봉동)							
	지번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102동 301호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발급번호				발급일자						2025년 6월 16일 10:56:40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248번길 74-13, 102동 302호 (신봉동)									
		지번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455-4 102동 302호									
세대순번	세대주 / 최초 전입자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최초 전입자의 전입일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담당자 의견	
유의사항	
1.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 수 료 청 구 서

감정평가서 번호 : 태평양 D42506-F-1202호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귀하

—금일백칠십만팔천삼백원整 (₩1,708,300.-)

1. 2025-06-12 일자 귀 제 『 - 』 호로 의뢰하신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55-4 포에테빌레 제101동 제1층 제101호 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1,405,360	하한율 적용(0.8) $1,006,000 + (624,000,000 \times 8 / 10,000 \times 0.8) \approx 1,405,360$ 원
실 비	여 비	113,800	용인시 수지구
	물 건 조 사 비	20,000	10,000 x 2동
	공 부 발 급 비	5,200	
	기 타 실 비	9,000	사진촬영비 1,000원 x 4장 x 2부 = 9,000원
	특 별 용 역 비	-	
	소 계	148,000	
합 계(공급가액)		1,553,000	* 1,000원미만절사
부 가 가 치 세(세액)		155,300	
총 계		1,708,3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1,708,300	

※ 수수료는 아래의 계좌 중 선택하여 입금 바라오며 입금자명은 의뢰문서번호 또는 감정서번호(D42506-F-12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주시시오.
연락이 안될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겠습니다.

★ 계좌번호 ★ - 예금주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북부지사

- ◆ 국민은행-광화문기업금융지점 : 195101-04-000178
- ◆ KEB하나은행-목동지점 : 125-910001-84005
- ◆ 농협중앙회-일산농협 정발산역지점 : 217023-55-000035
- ◆ 우리은행 : 1005-200-216111

2025. 06. 18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공급자(사업자) 등록번호 : 128-85-33470]

지사장 박희배

(TEL. : 031-932-0072 FAX. : 031-932-0073)

